2014.7.7 제**290**호 Weekly

이슈

재보험거래에 대한 업무보고제도 개선 및 투명성 제고 시급

글로벌 이슈

미국 퇴직연금가입자를 위한 은퇴 설계 제언 영국의 네덜란드식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시사점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Weekly 2014.7.7 이슈

재보험거래에 대한 업무보고제도 개선 및 투명성 제고 시급

송윤아 연구위원

요익

-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제완화 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여타산업과 달리 금융산업은 시장참여자간 정보 및 교섭력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담보된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특히, 재보험은 기업간 · 국경간 · 전문적 거래라는 이유로 재보험거래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적 접근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실제로 규제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이 절실함.
 - 특정 변수가 재보험산업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감독당국이 재보험거래에 대해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에 달려있음.
 - 일례로, 1980년대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연쇄도산과 관련하여, 미국은 재보험거래에 대한 감독당국의 정보가 부족하여 (재)보험사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 손해보험회사의 연쇄도산으로까 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이후 재보험거래에 대한 업무보고를 대폭 개선한 바 있음.
- 원보험수익자 보호라는 재보험 감독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국경간·기업간 거래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규제적 접근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재보험거래 당사자의 업무보고는 가장 소극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감독수단이라 할 수 있음.
 - 각국에서 재보험을 감독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재보험회사의 지급불능위험으로부터 원보험 수익자(개인 및 기업)를 보호하는 것임.
 - 특히, 재보험은 계약의 유형 및 복잡성, 변동성, 거래의 지역적 범위, 현금흐름, 수재위험에 대한 정보의 질, 요율체계 측면에서 원보험과 다르고, 이러한 차이는 원보험과 재보험간 상이한 규제적 접근을 요함.
 - 그러나, 재보험은 교섭력이 대등한 기업간 거래이고 국경간 거래라는 특수성이 있어 재보험거래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적 접근은 상당히 제한적임.

- - 재보험거래에 대한 업무보고내용의 구체성과 더불어 보고내용의 공개 범위 및 기준, 보고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통제방법 등이 추가로 논의되어야 할 것임.
 - 보험회사는 지난 3월부터 모든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출재내용을 보고하고 있으나, 재보험거래당사 자의 재무상태와 재보험시장의 규모·구조·행태·성과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업무보고제도 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미국과 호주 등 주요 재보험서비스 수요국의 경우 공개원칙 하에 거래상대방별로 재보험거래내용을 상세히 작성 · 보고할 뿐 아니라 거래당사자의 재무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업무보고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음.

1. 검토배경



-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제완화 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여타산업과 달리 금융산업은 시장참여자간 정보 및 교섭력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담보된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금융규제의 근본적인 목적은 정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시장실패로 발생하는 자원배분의 비효율 성을 바로잡고 절대적 정보 우위에 있는 금융회사를 정부가 규제를 통해 통제하면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임.
 - 따라서, 성공적인 규제완화정책은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함.
 - 첫째, 불필요한 규제는 제거하되 규제(경제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은 제고해야 함.
 - 둘째,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 및 교섭력 측면에서 열위에 있는 거래당사자의 권리를 우 선적으로 보호해야 함
- 특히, 재보험은 기업간 · 국경간 · 전문적 거래라는 이유로 재보험거래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적 접근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실제로 규제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¹)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이 절실함.

¹⁾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바람: 송윤아ㆍ정인영(2012), 「재보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법제 마련 필요성: 재보험

- - 재보험회사의 지급불능위험은 재보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적으로 예방될 수 있는 것으로, 특정 변수가 재보험산업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감독당국이 재보험거래에 대해 얼마나잘 파악하고 있는지에 달려있음.
 - 일례로, 1980년대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연쇄도산과 관련하여, 미국은 재보험거래에 대한 감독당국 의 정보가 부족하여 (재)보험회사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 손해보험회사의 연쇄도 산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이후 재보험거래에 대한 업무보고를 대폭 개선한 바 있음.
 - 1980년대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연쇄도산의 시장적인 요인은 보험회사의 성장위주의 경영전략과 (재)보험회사의 MGA(대리인)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및 감시 부족이며, 이는 지급이행능력이 부족한 재보험회사 선택과 언더라이팅 부실을 초래함.
 - 그러나, 감독당국의 재보험거래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여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연쇄도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재보험거래에 대한 규제현황과 재보험거래에 대한 업무보고의 의의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제언으로 마무리함.

2. 재보험거래에 대한 규제 현황



- - 직접규제란 감독당국이 재보험회사의 진입, 가격, 영업행위, 건전성 등을 직접 규제하는 것임.
 - 허가조건, 지배구조,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자산운용규제, 부채관리규제, 자본적정성과 건전성, 영업행위, 검사, 경영공시, 보고
 - ◎ 간접규제란 출재사의 재보험거래를 규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수재사를 규제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 출재사의 재보험자산 인정요건, 재보험관리모범규준, 보고 등을 통해 건전한 재보 험거래를 유도함.

신용리스크의 위험과 규제 공백」, 보험연구원 주간이슈.

- 보험업법상 재보험업은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중 하나로 간주되어(동법 제4조) 재보험회사에 손해보험 회사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책임준비금 면제요건,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의 권고,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등 출재사에 적용되는 규제가 재보험회사를 간접적으로 규제함.
 - 보험업법시행령은 보험회사가 적격 재보험회사에 출재한 경우 수재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별도
 의 재보험자산으로 인정하고 부적격 재보험회사에 출재하는 경우에는 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함.²)
 - 출재사에 적용되는 상기 재보험자산인정요건은 출재사로 하여금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한 재 보험회사에 출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재보험회사를 간접적으로 통제함.
 -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에 의해 보험회사의 재보험자산에 대한 신용위험액 산출시 직접 재보험거래 계약을 맺은 1차 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0.8∼6.0%의 위험계수가 적용함.
 - 이로써 보험회사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신용등급이 보다 높은 재보험회사에 출재할 유인이 있고, 이는 재보험회사가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할 유인을 제공함.
 - 재보험관리모범규준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재보험거래를 관리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권고함.
- - (재)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기적으로 작성·제출해야 함.
 - 재보험거래 주요지표 요약(분기별), 보험종목별 재보험 수지차 현황(분기별), 보험종목별 재보험 험 손익현황(분기별, 국내/해외 구분), 계열보험회사와 재보험 출수재 현황(분기별), 재보험미수금 현황(분기별), 재보험회사별 출재현황(연도별), 특약재보험 출재현황(분기별)
 - 특히, 금융감독원은 재보험사별 출재현황, 재보험미수금 현황, 특약재보험 출재현황 등 재보험거 래에 대한 업무보고제도를 일부 개선하여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과거에는 수재사별 재보험료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주요거래선에 한해 수재사별 출재현황을 작성토록 하였으나, 지난 3월부터 모든 거래 재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출재현황을 작성토록 함.
 - 재보험회사별 출재현황은 수재회사(회사명, 소재지, 신용등급, 적격여부), 출재보험료, 출재보험금, 수입손해조사비, 출재손해액, 손해율, 출재보험수수료, 출재손익, 고정이하 순미수금 등을 포함함.

²⁾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2항~3항.

3. 재보험거래 업무보고. 왜 중요한가?



■ 본 절에서는 재보험거래에 대한 규제적 접근의 당위성과 원보험과는 상이한 규제적 접근의 필요성을 기술하며,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재보험거래에 대해 규제적 접근이 어려운 현실적 이유를 설명 함으로써 재보험거래에 대한 정교한 업무보고가 얼마나 중요한 감독수단인지를 역설함.

가. 재보험거래에 대한 규제적 접근의 당위성: 원보험 수익자 보호

- 각국에서 재보험을 감독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재보험회사의 지급불능위험으로부터 원보험 수익자(개인 및 기업)를 보호하는 것임.
 - 이외에도, 재보험시장에 언더라이팅 사이클이 존재하는 한 시장의 기능에 의존해서만은 재보험시장이 장기적으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독자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도 있음.
 - 다시 말해, 재보험담보력의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은 연성시장에서 재보험회사는 요율을 산정함에서 있어서 위험자체에 대한 엄격한 평가보다는 시장의 수요·공급만을 고려하여 과도하게 낮은 요율에 위험담보를 제공할 개연성이 있음.
- - 상법은 제661조에서 재보험계약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³⁾ 제726조에서 책임보험규정의 재보험에의 준용을 명시하고 있음.
 - 이는 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에 관한 규정이 재보험에도 적용될 것인 가에 대한 해석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4)
 - 장덕조(1999)는 원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고 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 직접청구 권이 재보험계약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원보험수익자와 재보험회사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발생하는

³⁾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즉, 원보험회사는 그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지급을 이유로 재보험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재보험회사의 재보험금의 지급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음.

⁴⁾ 장덕조(1999), 「재보험에 있어 원보험수익자의 직접청구권: 상법 제726조의 검토」, 보험개발연구.

예외적인 경우를 열거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재보험계약서상 직접청구조항이 있는 경우임.

- - A.M. Best에 따르면, 미국 손해보험회사 파산(1969~2010년)의 3.7%, 그리고 생명·건강보험회사 파산(1976~2006)의 2.0%가 재보험회사의 지급불능에 기인함.5)
 - 일례로, 미국 손해보험회사인 Integrity Insurance Company(이하, Integrity)는 수재사인 Mission Insurance Company(이하, Mission)가 타재보험회사로부터 재보험금을 회수하지 못해 파산하자 출재사인 Integrity도 Mission으로부터 재보험금을 회수하지 못해 연쇄 도산하였는데, 이는 피해규모가 미국 역사상 3번째로 큰 손해보험회사의 파산으로 기록됨.

나. 원보험과 상이한 규제적 접근의 필요성

- - EU는 원보험과는 다른 재보험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재보험감독기준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원보험과 다른 재보험의 성질을 위와 같이 제시한 바 있음.6)
 - EU의회는 회원국간 동일한 재보험규제, 그리고 원보험과는 다른 재보험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재보험감독기준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2005년 재보험지침(Reinsurance Directive)을 승인하여 EU 회원국이 2007년 12월까지 동 지침을 자국법에 반영하도록 함.
- - 이는 재보험회사의 실제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보험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함을 의미함

⁵⁾ 송윤아(2013), 「재보험금 회수가능성 제고를 위한 호주의 건전성규제 강화」, 주간이슈, 보험연구원.

⁶⁾ European Commission(2002), "Study into the Methodologies for Prudential Supervision of Reinsurance with a view to the Possible Establishment of an EU framework".

- **둘째.** 재보험은 원보험보다 변동성이 더 큰 경향이 있음.
 - 통상, 원보험은 익스포저가 비교적 작은 다수의 증권들로 구성된 반면 재보험은 누적손실에 노출되어 있고 대형손실의 가능성이 큼.
 - 또한 재보험회사는 최종 위험인수자로서 원보험회사에 비해 보유율이 높은 편임.
- ₩ 셋째, 원보험과 달리 재보험은 위험관리 측면에서 국경간 거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원보험에 적용되는 국내기반 감독은 재보험에 적합하지 않음.
- - ◎ 요율조정조건부 계약은 고정요율조건부 계약보다 리스크 익스포저가 더 낮은 경향이 있음.
- 다섯째, 원보험과 달리 신용등급은 재보험영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대부분의 국가가 원보험회사의 지급불능에 대비하여 예금자보험과 같은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보험계약자. 특히 개인 계약자에게 원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은 계약체결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님.
 - 반면, 거래상대방인 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인 경우 출재사가 해당 출재보험료를 재 보험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보험영업에서 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은 중요한 요소임.

다. 재보험거래에 대한 규제적 접근의 한계와 업무보고의 의의

- 재보험거래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보험은 교섭력이 대등한 기업간 거래이고 국경간
 거래라는 특수성이 있어 재보험거래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적 접근은 상당히 제한적임.
 - 재보험회사에 대한 직접규제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
 - 국경간 거래라는 재보험의 성격상 소재국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재보험회사를 자국 감독기관 이 직접 규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재보험거래의 국제성을 감안할 때 재보험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자국재보험회사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조세 및 규제 도피처로 자본이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음.

- 또한, 출재사를 통한 간접규제는 비효율적 자원배분, 사업비 및 계약자부담 증가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7)
- 마지막으로, 재보험은 기업간 거래이고 전문적이고 복잡한 영역으로, 감독자원이 제한적인 현 상황에서는 재보험거래에 대한 실효적인 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볼 때, 재보험거래에 대한 재보험회사와 원보험회사의 업무보고는 가장 소극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즉 시장왜곡이 적은 사후감독수단이라 할 수 있음.8)

라. 미국사례를 통해 본 재보험거래 업무보고의 중요성

- 1980년대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연쇄파산에 재보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되자,⁹⁾ 손해보 험회사의 건전성과 관련하여 재보험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됨.¹⁰⁾
 - 1980년대 미국 손해보험회사 Mission과 Transit Casualty Company(이하, Transit)는 재보험 금 회수에 실패하여 파산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피해규모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손해보험회사의 파산으로 기록됨.
 - Transit의 MGA¹¹⁾가 거래한 대부분의 재보험회사는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나머지 재보험 회사들은 Transit과 그것의 MGA의 언더라이팅 과실을 이유로 재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 조사소위원회는 Transit의 파산은 부실한 언더라이팅, 재보험, MGA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및 감시 부족을 파산의 주요인으로 지적함(MGA는 거래규모에 따라 커미션을 받음).
 - Mission이 재보험금을 회수하지 못해 파산하자 Mission에 출재한 Integrity도 Mission으로부터

⁷⁾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바람: 송윤아(2013), 「재보험금 회수가능성 제고를 위한 호주의 건전성규제 강화」, 주간이슈, 보험연구원.

⁸⁾ Statutory Accounting Principles Statement of Concepts는 보험회사의 업무보고의 목적 및 의의를 다음과 같이 기술함: "The cornerstone of solvency measurement is financial reporting. Therefore, the regulator's ability to effectively determine relative financial condition using financial statements is of paramount importance to the protection of policyholders...".

⁹⁾ GAO(1990)보고서에 따르면 3대 파산과 관련된 미회수재보험금 규모는 100~20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1988년 미국 손해보험 순자산의 8~17%에 해당함.

^{10) &}quot;Failed Problems: Insurance Company Insolvencies", Subcommittee on Oversight and Investigation of th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1990.

¹¹⁾ 재보험거래에는 3가지 유형의 중개인이 있음: reinsurance broker는 출재사의 대리인, reinsurance manager는 수재사의 대리인, managing general agent는 재보험회사로부터 원보험 언더라이팅 등 보험회사 고유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중개인임.

재보험금을 회수하지 못해 연쇄도산하게 되는데, 이는 피해규모가 미국 역사상 3번째로 큰 손해보 험회사의 파산으로 기록됨.

■ 당시 에너지상업 상임위(Hous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의 조사소위원회는 재보험거래에 대한 정보의 한계로 인해 감독당국이 적시에 재보험거래 당사자의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재보험체인을 통한 연쇄도산이 사전에 예방되지 못 하였다고 평가함.¹²)

〈그림 1〉 재보험체인



- 따라서, 관련 상임위는 GAO(General Accounting Office)에 재보험거래 당사자의 재무상태를 파악함에 있어서 감독당국이 이용가능한 정보의 한계와 유형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후 재보 험거래에 대한 업무보고가 대폭 개선됨.¹³⁾
 - GAO는 당시 감독당국이 이용가능한 재보험거래에 대한 정보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함
 - 무엇보다도, 재보험을 인수하는 원보험회사가 원보험과 재보험 재무데이터를 재무제표에 합산해 서 나타냄으로써 재보험이 원보험회사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움
 - 둘째, 중개인을 통한 재보험거래는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고 과거 보험회사 파산의 잠재적 요 인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업무보고에는 재보험중개인에 대한 정보가 없음.
 - 셋째, 과거 지급불능위험에 빠진 보험회사들의 사례를 보면 원보험회사가 자신의 위험이 어느 재보험회사에 재출재되는지 알지 못하고, 감독당국 역시 보험회사의 업무보고만으로는 재보험체 인을 파악하지 못함.14)
 - 넷째, 부적절한 내부통제로 인해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재무정보의 안정성과 정확성이 훼손됨. 15)
 - 미국은 재보험거래당사자의 재무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거의 매해 재보험거래에 대한 업무보고 양식(Annual Statement: Schedule F)을 수정함.

¹²⁾ GAO(1990). "State Reinsurance Oversight Increased but Problems Remain." GAO/GGD-90-82.

¹³⁾ GAO(1990).

¹⁴⁾ 보험계약과 재재보험계약은 별도의 독립된 계약이지만,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연쇄도산 사례에서 보듯이 재재보험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재보험수익자인 원보험회사의 재무상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

¹⁵⁾ 예를 들어, 1983년 Transit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450개 재보험회사와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동기간 1,700개의 재 보험회사가 Transit으로부터 수재한 것으로 기록함.

4. 결론 및 시사점



- 재보험거래에 대한 업무보고는 감독당국 및 시장참여자가 재보험거래당사자의 재무상태는 물론 거래 단계별 재보험시장의 규모·구조·행태·성과 등을 파악하기 용이하고 거래상대방간 보고내용의 대조 를 통한 보고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 미국의 경우 업무보고양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고 거래상대방별로 재보험거래내용을 Annual Statement에 상세히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감독당국 뿐만 아니라 투자자를 포함한 일반에 도 공개됨.
 - 각 주에서 보험사업의 인가를 취득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보험거래내용을 상세히 작성·제출 해야 함.
 - 미국소재 보험회사의 경우 Schedule F(손해보험)와 Schedule S(생명 및 건강보험)를, 미국에 소재하지 않는 보험회사의 경우 Form CR-F(손해보험)와 Form CR-S(생명 및 건강보험)를 작성·제출해야 함
 - 2012년 기준 Schedule F는 거래상대방별로 출·수재현황, 원수보험료의 75% 이상을 출재한 계약, 담보 및 지급보증 정보, 분쟁중인 재보험금 등에 대한 정보를 작성해야 함.
- - 거래당사자별 재보험자산 보고서의 보고 항목: 거래상대방명, 거래상대방 그룹명, APRA 등급, 소재지, 그룹소재지, 담보 및 지급보증의 형태, 담보 및 지급보증 금액, 재보험금추정액 등을 작성해야 함.
 - 거래당사자별 재보험익스포저 보고서의 보고항목: 거래상대방명, 거래상대방 그룹명, APRA 등급, 소재지, 그룹소재지를 비롯하여 해당 거래당사자가 재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험위험계수 · 보험집중위험계수 · 자산위험계수 · 자산집중위험계수 · 운영위험계수 · 요구자본 등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변동분 등을 작성해야 함.

¹⁶⁾ Reporting Standard GRS 460.0 G Reinsurance Assets by Counterparty.

¹⁷⁾ Reporting Standard GRS 460.1 Exposure Analysis by Reinsurance Counterparty.

- 보험회사는 거래상대방별 재보험금추정액의 합계가 총 재보험금추정액의 95%이상이 되도록 거의 모든 거래상대방과의 재보험거래내용을 보고해야 함.
- 보고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이사회 및 경영진의 책임으로 함.
- 미국과 호주 등 주요 재보험서비스 수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재보험거래에 대한 사후규제가 상당히 취약한 편인데. 재보험거래에 대한 투명성도 상당히 낮은 편임.
 - 무엇보다도, 미국과 호주는 우리나라에 비해 재보험자산인정요건이 까다로운 편임.
 - 미국과 호주의 경우 보험회사가 출재에 대해 회계상의 이점을 얻기 위해서는 수재사에 담보설 정을 요구하거나 해당 재보험계약이 특정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수재사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이거나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 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것 외에는 계약조건에 대한 별도의 요구는 없음.
 - 둘째, 미국과 호주의 경우 재보험자산이 특정 거래상대방에 집중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거나 요구자본 산출시 집중리스크를 반영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거래상대방 집중리스크에 대한 별도의 구속력 있는 규정이 없음.
 - 셋째, 미국과 호주의 경우 공개원칙 하에 거래상대방별로 재보험거래내용을 상세히 작성·보고하 도록 하고 업무보고의 목적이 건전성감독에 있음을 분명히 함.
 -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재보험거래내용을 거래상대방별로 작성하기 시작했으나, 기업의 경영공시 또는 금융통계포털을 통해 일부내용이 공개됨.
- - 재보험거래에 대한 업무보고제도 개선을 규제강화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시장왜곡을 초래하는 규제 도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조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kiqi

〈표 1〉 주요 재보험수요국의 재보험거래에 대한 규제 비교

구분		우리나라	미국	호주
시 장 현 황	출 재 율	- 일반손해보험: 55.7% (2011년)	- 손해보험: 84 _. 7%(2009년)	- 재물보험: 40 <u>.</u> 7%(2011년)
재보 험자 산 인정 요건		- 수재사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이거나 국내 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 준을 충족해야 함	 수재사의 신용도를 6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별 수재위험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담보를 설정해야 함 출재사 소재 주정부는 재보험금 미지급 규모와 기간에 따라 재보험회사의 신용도를 하향 조정할 수 있음 지급불능약관과 증개자약관 삽입 	 호주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분쟁 시호주법원에서 처리한다는 조건 출재사는 재보험특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placing slip을 확보하고 재보험특약보고서를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함 6개월 이내에 출재사와 모든 재보험회사의 서명과 날인이 기입된 특약서 내용을 확보해야 함
거래 상대 방 리스 크관 련 자기 자본 규제		- 요구자본 산출시, 수재 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0.8~6.0%의 위험계 수 적용	- 요구자본 산출시, 수재사의 신용등 급에 따라 위험계수 적용	 - 요구자본 산출시, 인가 재보험회사에 출재한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0~20%의 위험계수 적용 -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비인가 재보험회사에 출재한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20~100%의 위험계수를 적용 - 재보험금 지급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수재사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100%의 위험계수를 적용
집중 리스 크 규제		- 재보험거래 모범규준을 통한 권고: 구체성과 강제성 부족	- 전년도 수입보험료의 20% 이상을 특정 재보험회사에 출재하거나 특 정 재보험회사로부터 재보험환급 이 전년도 계약자잉여금의 50%를 초과한 경우 주정부에 통보 의무화	- 요구자본 산출시, 자산집중리스크 (특정 자산 또는 특정 거래상대방 에 대한 위험노출도)를 고려함: 재 보험회사의 담보설정여부 및 신용 등급 등에 따라 상이한 위험계수 적용
업무 보고		거래상대방별 재보험 거래내용 보고일부 공개(금융통계포 털 또는 경영공시)	거래상대방별 재보험거래내용 보고공개원칙	거래상대방별 재보험거래 내용 보고공개원칙

- 주: 1) 상기 표에서는 미국과 호주의 재보험거래에 대한 규제의 일부를 열거했을 뿐, 이외에도 더 많은 규제가 있을 수 있음.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재보험자산인정요건, 거래상대방리스크관련 자기자본규제, 집중리스크규제, 업무보고'는 위에 열거한 것이 전부임.
 - 2) 미국 대부분의 주는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 이하 NAIC)의 재보험인정모델법 및 규제(Credit for Reinsurance Model Act-Regulation)를 원인대로 또는 원인에 수정을 가하여 입법화하여 '재보험자산인정요 건', '거래상대방리스크 관련 자기자본규제', '집중리스크규제'는 주마다 미세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 자료: 송윤아·정인영(2012), 「재보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법제 마련 필요성: 재보험신용리스크의 위험과 규제 공백」, 보험연구원 주간이슈; 송윤아(2013), 「재보험금 회수가능성 제고를 위한 호주의 건전성규제 강화」, 보험연구원 주간이슈.